제16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 모집 공고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성장부문」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4일

※ 본 공모는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공고/공모'에서 접수하며,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한 기업등록(인증)이 필요합니다. 투어라즈 회원가입 시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한국평가데이터에 기업정보를 등록 하신 후 투어라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2월 26일까지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한 기업등록(인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

이에, 기업 등록에 최소 약 1-2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공모 접수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평가데이터(KoDATA)등록(인증)에는 최대 약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참고2(별첨) '투어라즈 사용자 매뉴얼' 필독 및 투어라즈 > (메뉴)정책지원 > (메뉴)공고/공모 > '한국평가데이터 기업등록방법 알아보기' 등 참고
-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02-3215-2543) 기업등록 접수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02-3279-6500)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사업목적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사업공고일 2025.2.14.기준)인
성장기업으로서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이내(2025년 5월 ~ 2025년 11월 예정)

□ 선정규모 : 40개 내외

과광베처확인증 발급

모집개요

I

□ 모집유형

모집유형	개 념	예 시
관광체험 서비스	정보탐색, 이동, 숙박, 체험 등 관광여정에 플랫폼 기반의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 제공	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여행관련 물품 대여 및 가격비교 관광상품(숙박, 항공 등) 예약 플랫폼 IoT 짐배송, 키오스크 서비스 등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	 테마여행 상품(한류, 미식, 반려동물, 공연, 캠핑, 쇼핑, 의료관광, MICE 등) AR/VR, 메타버스 등 활용 관광콘텐츠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관광인프라	오프라인 기반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 심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 테마공원, 목장·농원 등 자원을 활용한 체험 상품 및 서비스 • 공유자동차, 킥보드 등 이동수단 및 시스템
관광딥테크	디지털화, 기술 지원을 통해 관광 업계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B2B 사업	 전사자원관리(ERP), 고객관리(CRM), 숙박운영 관리(PMS), 블록체인, SaaS 기반솔루션 등 활용 관광기업 경영 관련 기술 제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데이터 기술 활용 B2B 서비스 등

- ① 사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
- ② 융·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Ⅱ 지원요건

□ 지원자격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장 창업자로 사업 공고일(2025.2.14.)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성장창업자 :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 * 창업일이 '18.02.14. ~ '22.02.13. 해당되는 창업기업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이 '지원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해당자
- ※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참가기업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 (패스트트랙 기업) 업력 3년 이하의 기업이라도, 초기부문에 해당하는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기 협약을 완료한 자
- 관광벤처공모 초기부문 : 2023년(14회), 2024년(15회) 초기부문 선정자
- <u>관광액셀러레이팅 기업</u>: 2022년 2024년 선정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인 경우, 관광벤처 초기/성장부문 중 선택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ㅇ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①일반유흥주점업 56211 ②무도유흥주점업 56212 ③카지노 운영업 91242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1-4에 준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1]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 협약 이후에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함
 - * [붙임1] 목록 외에도 중앙정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자금이 포함된)의 경우 공사에 중복 수행 가능 여부 사전문의(tourbiz contest10@knto.or.kr) 요망
 -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2] 참고**
- ㅇ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 범위

◈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가능 범위

- 최근 3년간('22~'24)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
- **초기벤처** : 2022년(13회), 2023년(14회), 2024년(15회) 선정자 🖙 성장 지원가능
- 성장벤처 : 지원불가

◈ 한국관광공사 창업사업화지원 중복사업 범위

- <u>관광기업혁신바우처, 관광글로벌챌린지프로그램, 관광플러스테크, 관광두레,</u> 관광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부산,인천,대전세종,경남,광주,울산,경북,전북) 등
-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 인건비, 사무공간 지원 등의 경우는 신청 가능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이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ㅇ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5.3.10.기준, 증빙자료 제출필수>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 ◈ 예외조건 <공모 접수 마감일 '25.3.10. 기준, 증빙자료 제출필수>
 -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Ⅲ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7개월 이내 (협약체결일 ~ 2025. 11월 예정)

□ **지원내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니어취지 그	■ 사업화지원금 규모 : 편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회 ■ 총사업비 구성 : 사업회 총사업비(예)	사지원금(정부지원금) 치	등 지원
사업화자금	120백만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으 ■ 사용기간 : 협약기간 등 ■ 사용기준 : 광고선전비	통안만 집행가능(~'25	.11월까지)
기본 프로그램	■ 기업진단 : 기업별 심화 인터뷰를 통한 세부 계획(현황, 수요파악 등) 수립 ■ 전담멘토 : 성장기업 맞춤형(사업 및 IR 고도화 등) 전담 멘토링 운영 ■ 전문컨설팅 : 기업별 수요기반 특화분야 전문가 컨설팅		
특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지원)	■ 청계천클럽 : 미니 IR 형식의 소규모 투자유치 매칭 및 네트워킹 ■ 알럼나이 : 선배기업의 사업 노하우 전수 및 협업을 위한 교류 ■ 비즈니스 밋업 : - (B2G/B2B) 공사/지자체, 기업 간 투자유치 및 사업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 (이음주간 연계) 관광벤처기업 선후배 만남, 사업 노하우 전수 ■ 투자상담회 및 파이널 데모데이 : 관광벤처-투자전문가 1:1 오프라인 투자상담 및 관광벤처 대상 데모데이 개최 ■ '컴퍼니빌더(Company-Builder)' 프로젝트 : 관광유니콘/글로벌기업, 여행플랫폼 등 업계 선도기업의 경영·컨설팅·투자유치 등 1:1매칭 지원		
다자간 협업	■ 관광기업 이음주간 : 데모데이, 1:1밋업 등을 통한 관광벤처기업과 투자자, 지자체, 글로벌 기업간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홍보·판로개척	 ■ 홍보마케팅: 컨설팅, 광고지원(디지털 및 옥외 등),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연중 지원 ■ 최종성과평가 결과 우수 성장관광벤처기업 대상 장관상 및 시상금 지급 ■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관광벤처확인증' 발급 * 자격유지 통과 시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 2년 연장 		
시 상			
성장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u>2025년 2월 14일(금) ~ 3월 10일(월) 14:00시까지</u>

< 유의 사항 >

- ①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기업정보 등록(인증) 등의 절차의 경우,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 및 문의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모마감일 3~4일 전(근무일 기준) 진행하는 것을 권장
- ② 신청·접수는 3.10(월) 14:00 정각에 종료(신규신청 불가, 유형변경 등 불가)
- ③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 □ 신청방법 : 투어라즈(touraz.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접수 시 투어라즈 회원가입이 필요함
 - ※ 투어라즈 회원가입 시, 귀사의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한국평가데이터(주)(KoDATA)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투어라즈에 가입할 수 있음 (최대 2주 이상 소요)
 - * 투어라즈 회원가입 : 참고2(별첨) '투어라즈 사용자 이용 매뉴얼' 참조
 - *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인증 : 참고2(별첨) 및 별첨(양식) 참조 (투어라즈 공고/공모 > '기업등록 방법 알아보기' 또는 투어라즈 고객센터 > '자주묻는 질문' 게시글 참조)

①투어라스		
기업회원 가입		
KoDATA 연동		
기업정보 등록 가입		
(약 1-2주 소요,		
`~ 2.26까지)		

②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서류 준비

③신청 등록

공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 사업계획서 및 서류 등록

④접수 확인

접수 마감시까지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 ②사업계획서 작성, ③신청등록 단계를 투어라즈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투어라즈 페이지 작성중에도 6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별도의 문서에서 작업하시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차 제출서류(접수마감일, 3월 10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계획서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첨2) 창·폐업 및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만 제출) ※ 공사 제공양식 준수 필수 (임의양식 평가대상 제외)	투어라즈>공고/공모 (https://touraz.kr)
❷ 업력 증빙 서류	❷-1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발급일자는 반드시 '25.2.14 이후,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사전 준비요망 ※ 발급처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대표자의 ①모든 창·폐업이력 내역 온라인 입력 및 ②업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PDF파일로 필수제출)

❷-2 가.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① 모든 계속사업의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수제출' ②비영리조합의 경우 '고유 번호증'등 ③공동(각자) 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예시1)

공동대표 2인의 경우 →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❷-2 나.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폐업내역의 '폐업사실증명원' (예시1)

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재된 법인 3개 중 유지 2개, 폐업 1개 → 유지 중인 2개 법인에 대한 각각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과, 폐업한 1개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모두 제출 필요 (예시2)

공동대표 2인의 경우 \rightarrow 2인 각각의 총사업자등록내역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패스트 트랙 해당자	패스트트랙을 증명할 별도 제출서류 없음	'사업계획서'상 패스트트랙 체크	
가점 서류	사업자등록증 (지역가점)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단, 모집공고일('25.2.14.)이후 발급 서류에 한해 가점 인정함	
(해당자에 한함)	주민 등록등본 (청년우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경제조직)	신청기업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스캔하여 투어라즈 시스템에 첨부	

□ 2차 제출서류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4월 4일까지]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2차 발표자료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❸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공동대표 기업일 경우
④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서 및 서약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경명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로 서류상 체납 사실이 없어야함		
⊘ 주주명부	자유양식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제출
③ 창업지원 사업 중복 참여 불가 확인서	공사 제공양식(PDF 파일로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관광관련 사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관련 사업목적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지사·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가능(타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u>동시 선정 시, 협약체결일('25.5.1. 예정) 이전에 반드시 1개 사업 선택하여야</u> 하고,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붙임1] 참고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전담기관)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등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2]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 고 신청하여야 함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투어라즈 접수 필수)
- 신청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 권장
 - * 투어라즈 회원가입 및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등록(인증) 완료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접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만 허용되며,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불인정
- <u>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u>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나 서류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 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5.2.14.~) 발급 된 증명서만 인정
- 지원자는 모집개요,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시유의사항 등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업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
- 지원자는 본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수락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함

V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circ **평가절차** : 자격검토 \rightarrow 1차 서류평가 \rightarrow 대표자 심층인터뷰(온라인) \rightarrow

2차 발표평가 → 3차 현장실사(심사위원회 지정기업 한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8/18=	서류	발표		
1.사업개요 및 특징	10%	15%	1-1. 사업개발 동기 및 배경	
1.71 11 11 2 3 3 3	1070	1370	1-2. 사업의 특장점	
			2-1. 시장현황 및 목표고객	
2.시장 및 사업모델	30%	250/	2-2. 사업모델(Business Model)	
2.43 X 4011	30%	35%	2-3. 서비스(상품)의 시장성	
			2-4. 잠재리스크 및 대응방안	
			3-1. 상품·서비스·인프라 개발 및 고도화 계획	
	30%	30%	3-2. 홍보 및 판로개척	
3.사업전략			3-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3-4. 일정계획	
			3-5. 사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전망, 재무상태	
			4-1. 관광산업 및 시장에 대한 이해	
4.관광산업 연관성	20% 1	10%	4-2. 사업 아이템과 관광산업과의 연관성	
			4-3. 관광산업 내 성과발생 가능성 및 기대효과	
			5-1. 사업자의 전문성	
5.팀 역량	10% 1	10%	5-2. 사업운영 능력	
			5-3. 운영조직 및 일자리 창출계획	
총 계	100%	100%		

○ **우대사항**: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3점부여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지원내용	점수	비고
지역우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외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해당지역일 경우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 단, 소재지 신고일자가 '25.02.14 공고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함	1점	
청년우대	■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85.02.15. 이후 출생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11	1점	최대 3점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 유효기간 내「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보유 기업	1점	

^{*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평가제외 대상

-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예시: 예비 또는 초기관광 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성장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
- 2차 발표평가 및 (해당시)3차 현장실사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 및 참석하지 않은 경우
-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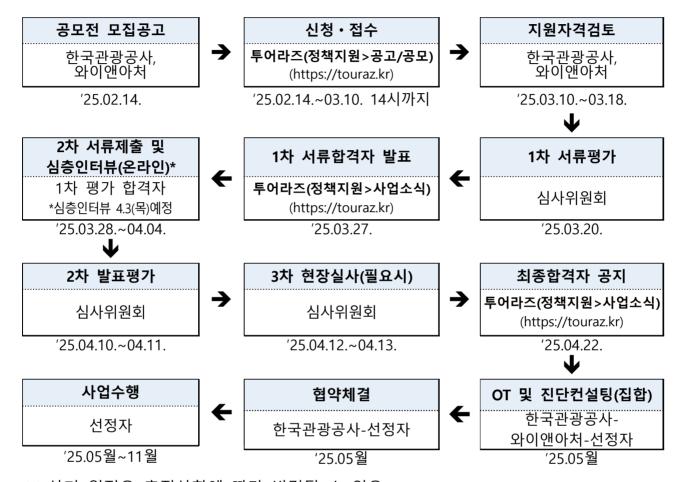
<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 공보선 평가	및 선성 프로세스 >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자격검토	공모전 신청자	■ 제출서류, 성장관광벤처 지원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표준양식 준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계속사업자)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폐업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서류 업력사항 검토
-		
1차 서류평가	지원자격검토 합격자	■ 평가방식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평가기준 : 사업개요 및 특징,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관광산업 연관성, 팀 역량 등
-		
1차 합격자 공지 (2배수)	1차평가 합격자	■ 2차 발표평가 준비
_		
추가서류 제출 및 심층인터뷰	1차평가 합격자	■ 2차 발표평가 준비 ■체납사실 등 검토 -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 근로기준법준수 확인서 및 서약서,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확인서 등 ■심층인터뷰 - 진행방식 : 창업가 온라인 비대면 인터뷰 * <u>창업기업 대표자 필히 참석</u> * 사업 참여 적극성, 이행 및 혁신의지 등 참고
-		
2차 발표평가	1차평가 합격자	■ 평가방식: PT발표 및 질의응답 - <u>창업기업 대표자가 필히 발표</u> , 팀원 1명 배석가능 (참석자 전원 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는 2차 기제출한 PPT 자료를 활용함 ■ 평가기준: 사업개요 및 특징,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전략, 관광산업 연관성, 팀 역량 등
-		
2차 합격자 공지 및 현장심사 진행준비	2차평가 심사위원회 지정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상품·서비스 평가를 위한 직·간접 체험 등 제공 준비
3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 지정기업에 한함	■ 2차 발표평가 시 발표내용과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 여부, 실제 사업 영위여부 등을 바탕으로 관광벤처기업 선정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
-		
최종선정	최종 합격자	■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

\mathbf{VI}

추진일정 및 신청문의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문의처 : 성장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와이앤아처)

○ 연락처 : 070-7721-7068 / 070-8833-1582

○ 이메일 : tourbiz_contest10@knto.or.kr

※ 문의 전 반드시 FAQ(첨부파일)를 확인하신 후, FAQ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athbf{W}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u>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등에</u>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성장 관광벤처부문 선정기업은 <u>협약종료 2개월 이내 반드시 관광사업자</u>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선정자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함
 - *지정된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성장벤처 지원자격 위배 및 창업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화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 관련 법령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을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u>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u> 응모해야 하며, 운영사무국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사는 본 모집공고의 주관기관으로서 본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원 자격을 정할 수 있음

붙임1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부처
1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내역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일체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2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6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통합 창업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9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0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사업화 자금 포함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11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3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 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4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콘텐츠 투자 연계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문화체육관광부
19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
21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2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23	・로컬 관광기업 육성·지원(GKL)	GKL사회공헌재단

[※] 상기 목록 외, 중앙정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자금이 포함된)의 경우 공사에 사전문의(tourbiz_contest10@knto.or.kr) 요망

붙임2 사업화 자금 사용기준

구분		집행기준
재료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원료 또는 데이터 구입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및 홈페이지(앱)를 제작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비용
유형자산취득비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설비,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채용 직원 및 신규채용 1명당 기존 직원 1명 급여 지급 ·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기자재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공구, 부수 기자재, 서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공간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전시회 참가비	· 시제품 기획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반응조사비	· 상품 또는 체험서비스의 사전 고객 모니터링 및 시장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체험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테스트투어 비용 등
	법인설립비	· 사업자의 법인설립을 위해 집행되는 법무사 수수료
	회계감사비	·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세무기장료	· 세무 신고를 위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장 대행 수수료
여비	해외여비	·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피칭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 는 비용
광고선전비	홍보비	· 제품(서비스)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물, 광고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확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소요비

※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